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47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김광수,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오현정,
이광호, 이병도, 이영실,
이정인, 장상기, 최 선,
홍성룡, 황규복 의원(26명)

1. 제안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라. 호스피스 활성화 및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호스피스·넌탈)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넌탈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2022011700000004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광수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2.01.17

회신일 : 2022.01.19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의1(실태조사 등)은 시장이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제7조의1에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교육, 홍보, 정보제공,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교육 및 육성 지원,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서울시 시민건강국 기추진 사업 2020년 예산 240,000천원(붙임 참고)

※2021년은 코로나19상황으로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예산 미편성

※제8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나 교육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66,000천원으로 연평균 13,2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2년에 1번으로 가정
 - 실태조사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제출자료 참고·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